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. 5. 17 선고 2021가단122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변 론 종 결 2022. 4. 26.

판 결 선 고 2022. 5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K 전 1,782㎡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. 11. 1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C, D, F, G, H, I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E, J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경준

별지